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2021.1.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유실물의 처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사조력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안 제2조)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제7조)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위원장·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직무대행, 회의

개최·소집 절차, 회의 의결 절차 등), 실무위원회,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영사민원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8조)

라.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안 제9조-제10조)

해외안전정보의 해당내용(국가별 기본정보, 안전 관련 소식, 여행정보 등) 및 안내방법, 여행정보 및 특별여행주의보의 발령요건, 발령기간 등을 규정

마.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안 제11조-제14조)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방안(접촉 시도 방법에 관한 사항, 접촉 시 수감사유 등 확인, 변호사 및 통역사 명단 제공,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규정

바.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안 제15조)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통지, 변호사·통역사 명단 등의 정보 제공, 필요 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을 규정

사. 재외국민 사망·실종·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안 제16조, 제19조, 제20조)

아.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안 제17조-제18조)

자. 유실물의 처리(안 제21조)

차. 영사조력의 남용 또는 악용(안 제22조)

카. 경비의 부담(안 제23조-제25조)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법 제19조제1항 제1호)을 위한 경

비의 부담,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9조제3항)을 위한 경비의 부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해외송금 지원을 받으려는 재외국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타. 자료·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안 제26조, 제27조)

파. 권한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안 제28조, 제29조)

하. 민간부문과의 협력, 가족 등 연고자의 범위(안 제30조, 제3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생 략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사조력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매년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점검 및 평가한 후 영사 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 예산 확충 등을 통하여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영사 인력 및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10. 국가정보원차장
11. 경찰청장
12. 소방청장
13. 해양경찰청장
14.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단,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⑥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제2조제14호로 위촉된 위원, 제6항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영사민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① 외교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또는 방문 시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별 기본정보

2. 국가 및 지역별 안전 관련 소식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령한 여행경보

4. 그 밖에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여행경보의 발령)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령하는 여행경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제1호제라목에 따른 흑색경보는 「여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발령한다.

1. 단계별 여행경보 :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

가. 위험 수준 1단계 : 남색경보

나. 위험 수준 2단계 : 황색경보

다. 위험 수준 3단계 : 적색경보

라. 위험 수준 4단계 : 흑색경보

2. 특별여행주의보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② 제1항제1호의 단계별 여행경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 수준 평가에 따라 발령한다.

1. 범죄, 정정불안, 보건, 테러, 재난 등 주재국 현지 상황

2. 우리 국민 거주·체류 및 방문 규모, 재외공관 상주 여부

3. 그 밖에 여행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제2호의 특별여행주의보는 위험의 긴급성을 근거로 발령하며, 발령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재외국민의 행동요령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 접촉을 시도하는 때에는 방문·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을 접촉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포·구금 또는 수감 사유
2. 건강 상태
3.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 여부
4.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체포·구금 또는 수감 사실 통지 희망 여부
5. 변호사 또는 통역사 선임 희망 여부
6.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상의 영사접견권 고지 여부

③ 재외공관의 장은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구금 또는 수감사실 통지를 희망한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체포·구금 또는 수감사실을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과 면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면담 가능 여부, 면담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과 접촉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형사절차 안내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거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재국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이름, 성별, 구사언어, 연락처 등)
2. 주재국 변호사 선임 절차(국선변호사 선임 절차를 포함한다)
3. 그 밖의 일반적 형사 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이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지를 희망한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재외공관의 장은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 보호) ① 재외공관

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 주재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 내용, 불복 방법 및 향후 절차 등
2.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내용, 복역 장소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수감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재외국민을 정기적으로 방문·면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재외국민이 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교전상황, 소요사태 또는 교통차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접촉하기 곤란한 경우
3. 재외국민의 수감 기간이 짧아 석방 이전에 방문·면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주재국의 법령, 관습 등의 여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문·면담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상태
2.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 여부

3. 국내이송 희망 여부(조약 및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 이송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가족 등 연고자에게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재외공관의 장은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후 귀국을 원하는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4항제2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결과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재국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이름, 성별, 구사언어, 연락처 등)
2. 주재국 변호사 선임 절차(국선변호사 선임 절차를 포함한다)
3. 그 밖의 일반적 형사 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주재국 관계기관 등을 접촉하여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희망한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가족 및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인적 사항
2. 사망 일시 및 장소
3. 사망 원인
4. 그 밖에 사망과 관련하여 파악한 중요 사항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의 처

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거나 가족 등 연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신의 보존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주재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시신 처리에 관하여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없거나 가족 등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이 정하는 장례절차에 따라 시신이 처리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신처리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시신처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파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성년자를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재국 관계기관에 이를 알리고 임시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주재국 관계기관

과 협의를 통하여 미성년자의 국내 이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내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1.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가 미성년자의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국내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자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① 법 제14조제2항의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는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를 말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경우 의료보험 등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자가 국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기관에서 환자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자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환자의 가족 등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환자의 가족 등 연고자가 환자의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19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재 파악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주재국 법령에 따른 자료를 구비하여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신고자와 연락 두절된 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2. 실종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설명자료
3. 연락 두절된 자의 개인정보, 사진 등 기타 소재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②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재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재국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인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외국민의 피해 상황 파악
2.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조치
3. 재외국민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조치
4. 현지 방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5. 사망자 시신 운구 및 생존자 귀국 지원

6. 언론과의 소통 지원

7. 한인사회에 대한 안전정보 및 비상용품 제공

8.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 현지에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수단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나 선박, 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주재국으로부터 피해 보상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유실물의 처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사범」 제19조과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간 재외공관에 보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반환 요청이 없으면 이를 수취 여부 확인이 가능한 국제 배송 수단(등기우편,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경찰청장에 이송해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유실물의 가액에 비하여 이송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송으로 유실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유실물의 국제 배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유실물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유실물을 습득하였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송 또는 폐기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재외공관 홈페이지와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시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유실물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부담한다.

제22조(영사조력의 남용 또는 악용) 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국내 법령과 주재국 법령”을 말한다)에 위반되는 영사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2.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영사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3.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 또는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4. 통역, 번역 또는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5. 통·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교통비, 운송비, 체재비 등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지불, 보전 또는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
6. 범죄 수사, 범인 체포, 직접적인 신변보호 등 주재국 수사·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요청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의 수사·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경우

제23조(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경비의 부담)

-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동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의 내용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지원비 지원을 승인한다. 단, 재외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상황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제출서류와 진술내용의 진위 확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본부의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재외국민이 장애, 부상,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 내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파악이 가능한 금융재산 현황
3.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상태가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재외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다.

⑤ 긴급지원비 지급액의 상한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⑥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를 해당 사용처에 직접 지불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고 제2항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시한다.

⑦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재외국민의 진술내용에 거짓·기타 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은 국민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경비의 부담)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이하 “긴급구난비”라 한다)을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동 비용을 상환하여야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이송하는 안전한 지역이 최단 거리의 안전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비용의 지출을 요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긴급구난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탑승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해외위난상황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재외국민으로부터 상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이동수단 탑승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탑승자에게 고지하고 향후 탑승비용 환수를 위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이동수단 탑승 희망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4항 및 법 제22조, 이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5조(해외송금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마약,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 또는 탈법을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
2. 상업적 목적의 송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재외공관의 가용한 예산 범위를 벗어난 경우
4. 그 밖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출입국정보
4.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5.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자료
6.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등)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재외국민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의 ‘금융정보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법 제21조제2항 및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영사민원시스템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고, 금융정보등을 영사민원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탁)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국세체납의 예에 따른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외교부장관(제2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을 위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업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위한 업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업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업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의 처리를 위한 업무
8.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긴급지원비 및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업무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의 지원을 위한 업무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업무

제30조(민간부문과의 협력)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영사조력과 영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인력 유관기관과 영사조력 유관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인을 사전 승인을 얻어 영사협력원, 해외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가족 등 연고자의 범위) 법과 이 영의 가족 등 연고자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과 이 영 제25조제1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연 락 처	(02) 2100 - 7583